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19 발의연월일: 2025. 2. 13.

발 의 자: 박상웅ㆍ정동만ㆍ서일준

박덕흠 • 고동진 • 이인선

신동욱 • 조지연 • 진종오

김미애 · 이상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자본·인력 부족 등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대한 요건이 과도하여 신규 조합 설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특히, 시·군·구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은 5명 이상의 발기인을 설립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시·도 또는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설립할 수 있는 이업종 사업협동조합의 경우 30명에서 70명의 발기인을 설립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전국 또는 시·도 단위의 이업종 사업협동조합 설립 및 공동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발기인 수에 대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 제80조 및 제90조제1호)

법률 제 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본문 중 "30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50명"을 각각 "30명"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70명"을 "50명"으로 한다.

제80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90조제1호 단서 중 "10개"를 "5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개 혅 행 정 아 제27조(발기인) ① -----제27조(발기인) ① 조합을 설립하 려면 제13조에 따른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수를 고려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수 한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나의 시·도 또는 하나의 시 · 도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30명 ----20명---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 면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 30명----어야 한다. 2.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 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 은 50명 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70명 이상의 발기 -----50명-----

인이 있어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0조(발기인) 사업조합을 설립	제80조(발기인)
하려면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	
진 자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	
어야 한다. <u>다만, 시·도 또는</u>	<u><단서 삭제></u>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설립하	
려는 발기인에 대하여는 제27	
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	
<u>한다.</u>	
제90조(발기인) 연합회를 설립하	제90조(발기인)
려면 제88조에 따른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1.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1
는 3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	
다만, 연합회의 업종이 도매	
업 또는 소매업이면 10개 조	<u>5개</u>
합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